

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52조의2 신설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 기금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,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시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명칭을 「서울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」를 「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로 변경(조례의 명칭)
- 나. 기금명을 기반시설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로 변경(안 제1조, 제3조)
- 다.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,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(안 제7조)
- 마.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(안 제8조 내지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2.11.3.~ 11.23.)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제2항 제13호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공공시설등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“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”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”를 “법 제52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공공개발기획단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공공개발추진반장”을 “공공자산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공개발기획단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부분 중 “다만,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” 를 추가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개발기획단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, “공공개발추진반장”을 “공공자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시계획, 마을공동체”를 “도시계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없는”을 “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, “대신한다”를 “대신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공시설등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”이란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</p>	<p><u>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공공시설등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”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.</p>

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
2. (생략)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
2. 3. (생략)
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

제3조(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(기금의 조성) -----
-----.

1. 법 제52조의2제2항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용도) -----

--.

1.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

-----.

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공공개발기획단 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공공개발추진반장
3. 기금출납원 : 공공개발기획단 기금담당사무관

② (생략)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~ 4. (생략)

1. ----- 기획조정실장
2. ----- 공공자산담당관
3. ----- 기획조정실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
심의위원회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공공개발기획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개발추진반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생략)
2. 도시계획, 마을공동체,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(생략)
- ③·④ (생략)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

① -----

----- 다만,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----- 기획조정실장-----
----- 공공자산담당관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도시계획-----

3. (현행과 같음)
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-----
----- 대신
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

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
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
무를 대행한다.

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관련 상위법 개정·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공공자산담당관 김도형(02-2133-9427)